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제6조 및 제10조”를 “제6조, 제10조 및 제10조의2”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폭방사선량”을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피폭방사선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피폭방사선량 저감 조치를 할 것

제10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따라 산정한 우주방사선에 따른 승무원의”를 “승무원이 본인의 우주방사선에 의한”으로, “정보 제공(승무원이)”를 “정보를”로, “하여야 한다)”를 “제공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고려하여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편성할 것

나.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노선 변경, 운항횟수 조정 등의 조치를 할 것

2.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비행근무를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국제·국내항공노선을 탑승하지 않는 근무로 변경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준 초과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
2. 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준 초과 경위를 조사하고 해당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재평가할 것
3. 제2호의 경위 조사 결과 및 재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승무원에게 통보할 것
4.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승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승무원이 국제항공노선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기 전
2. 국제항공노선에 근무중인 승무원에 대하여는 매년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해당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는 “승무원”으로 본다.

제10조의3(승무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방사선에 대한 개념 및 인체영향

2.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

3. 우주방사선안전 관계 법령

4. 그 밖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승무원에게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 해당 승무원이 국제항공노선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기 전

2. 정기교육: 2년마다(직전의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 3시간

2. 정기교육 : 1시간

제14조의2제1항 중 “한다)”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로, “공정부산물”을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의 취급·관리,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항공운송사업자

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라.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보관·보고에 관한 사항

제16조제1항제3호다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3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8조제4항 및 이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 초과 사실 보고

라. 법 제18조제4항 및 이 영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준 초과 경위

조사 결과 보고 및 피폭방사선량 재평가 결과 보고

마.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보고,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보고, 건강진단 결과 보고 및 교육실시 결과 보고

3의2.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3의3.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의 인수 및 보관

3의4. 법 제18조의3에 따른 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제조업자”를 “등록제조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조치, 건강진단 및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보관·보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의3에 따른 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별표 1에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항공운송사업자	
가. 연간 승무원의 최대 피폭방사선량이 1밀리시버트 미만	매 3년
나. 연간 승무원의 최대 피폭방사선량이 1밀리시버트 이상 3밀리시버트 미만	매 2년
다. 연간 승무원의 최대 피폭방사선량이 3밀리시버트 이상	매 1년

별표 2 제2호너목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의 1회 위반란 중 “70”을 “90”으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3의4호	600	1,200	2,000
---	----------------	-----	-------	-------

별표 2 제2호러목부터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3항제7호	300	600	1,000
머.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제4항제2의2호	90	150	300
버. 항공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법 제31조제3항제7의2호	300	600	1,000
서. 항공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제출한 경우	법 제31조제3항제7의3호	300	600	1,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전 국제항공노선 근무를 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과 동일한 건강진단을 당해연도 내에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조(승무원에 대한 교육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국제항공노선 근무를 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별표 1] <개정>

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제14조의2제1항 관련)

구분	검사주기
1. 취급자·등록제조업자(가목 및 나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짧은 검사주기를 적용한다) 가. 포타슘 40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사용하는 경우 1) 연간 취급·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량의 100배 미만 2) 연간 취급·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량의 100배 이상 1000배 미만 3) 연간 취급·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량의 1000배 이상 나.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사용하는 경우 1) 연간 취급·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10배 미만 2) 연간 취급·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 3) 연간 취급·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100배 이상	매 3년 매 2년 매 1년 매 3년 매 2년 매 1년
2. 항공운송사업자 가. 연간 승무원의 최대 피폭방사선량이 1밀리시버트 미만 나. 연간 승무원의 최대 피폭방사선량이 1밀리시버트 이상 3밀리시버트 미만 다. 연간 승무원의 최대 피폭방사선량이 3밀리시버트 이상	매 3년 매 2년 매 1년
3. 감시기설치·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 1) 감시기 운영 대수 1대 2) 감시기 운영 대수 2대 이상 5대 이하 3) 감시기 운영 대수 6대 이상	매 3년 매 2년 매 1년

[별표 2] <개 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31조제3항 제1호	250	500	1,000
나.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4항 제1호	70	15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다.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1조제3항 제2호	250	500	1,0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법 제31조제3항 제3호	250	500	1,000
마.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1조제3항 제4호	250	500	1,000
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 제1호	500	1,000	2,000
사.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3항 제5호	250	500	1,000
아.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 제2호	500	1,000	2,000
자.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 제3호	500	1,000	2,000
차.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광고한 경우	법 제31조제3항 제5호의2	300	600	1,000
카.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 제1호	750	1,500	2,500
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 제2호	750	1,500	2,500
파.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 제3호의3	600	1,200	2,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하. 법 제1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3호	750	1,500	2,500
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4호	750	1,500	2,500
너. <u>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u>	<u>법 제31조제4항제2호</u>	<u>90</u>	150	300
더. <u>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u>	<u>법 제31조제2항제3의4호</u>	<u>600</u>	<u>1,200</u>	<u>2,000</u>
러. <u>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u>	<u>법 제31조제3항제7호</u>	<u>300</u>	<u>600</u>	<u>1,000</u>
머. <u>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u>	<u>법 제31조제4항제2의2호</u>	<u>90</u>	<u>150</u>	<u>300</u>
버. <u>항공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한 경우</u>	<u>법 제31조제3항제7의2호</u>	<u>300</u>	<u>600</u>	<u>1,000</u>
서. <u>항공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제출한 경우</u>	<u>법 제31조제3항제7의3호</u>	<u>300</u>	<u>600</u>	<u>1,000</u>
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3항제7호의2	250	500	1,000
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1조제3항제8호	250	500	1,000
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1조제3항제8호의2	300	6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커.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명령에 따른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3항제9호	250	500	1,000
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1조제3항제10호	250	500	1,000
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4호	500	1,000	2,000
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5호	500	1,000	2,000
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5호	750	1,500	2,500
노. 법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4항제3호	70	150	3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건강진단)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건강진단) ①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해당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를 초과한 때	3. ----- ----- ----- ----- ----- ----- 제6조, 제10조 및 제10조의2-----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피폭방사 선량----- -----.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의하여	1.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가

현행	개정안
산정한 우주방사선에 따른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조사·분석 및 기록	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피폭방사선량 저감 조치를 할 것
가. 비행노선, 비행고도, 위도 및 경도	가.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고려하여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편성할 것
나. 승무원의 비행시간	나.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노선 변경, 운항횟수 조정 등의 조치를 할 것
다. 태양 활동에 의한 영향	<삭 제>
라. 그 밖에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필요한 사항	<삭 제>
2. 비행노선 변경, 운항횟수 조정 등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낮추는 데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비행근무를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국제·국내항공노선을 탑승하지 않는 근무로 변경할 것
3. 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따라 산정한 우주방사선에 따른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승무원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승무원이 본인의 우주방사선에 의한 ----- ----- 정보를 ----- ----- 제공할 것

현행	개정안
<신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준 초과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 2. 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준 초과 경위를 조사하고 해당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재평가할 것 3. 제2호의 경위 조사 결과 및 재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승무원에게 통보할 것 4.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설>	제10조의2(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승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승무원이 국제항공노선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기 전

현행	개정안
<신설>	2. 국제항공노선에 근무중인 승무원에 대하여는 매년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 · 분석 결과 해당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는 “승무원”으로 본다. 제10조의3(승무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방사선에 대한 개념 및 인체영향 2.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 3. 우주방사선안전 관계 법령 4. 그 밖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승무원에게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1. 신규교육 : 해당 승무원이 국제항공노선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기 전 2. 정기교육: 2년마다(직전의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 3시간 2. 정기교육 : 1시간
제14조의2(정기검사 등) ① 취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 감시기설치·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별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고철의 취급·관리 등에 관하여 별표 1의 주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의2(정기검사 등) ① ----- ----- -----한 다), 항공운송사업자----- -----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의 취급·관리,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 -----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현행	개정안
1.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1의2. 항공운송사업자 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라.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보관·보고에 관한 사항
2. (생략) ③·④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업무의 위탁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등) ①----- ----- -----.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보고의 접수 가.·나.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 가.·나.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다. 법 제18조제4항 및 이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 초과 사실 보고
<신설>	라. 법 제18조제4항 및 이 영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준 초과 경위 조사결과 보고 및 피폭방사선량 재평가 결과 보고
<신설>	마.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보고,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보고, 건강진단 결과 보고 및 교육실시 결과 보고
다. (생략)	바. (현행 다목과 같음)
<신설>	3의2.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신설>	3의3.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의 인수 및 보관
<신설>	3의4. 법 제18조의3에 따른 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3의2. (생략)	3의5.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5의3. ~ 8. (생략)	5의3.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취급자 또는 등록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등록제조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건강진단 및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신설>	4.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보관·보고에 관한 사무
<신설>	5. 법 제18조의3에 따른 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무
<신설>	6.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